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기후위기 파고 넘는 통합물관리 본격화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 점검
- 물관리 법정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의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5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카톨릭대학교 석좌교수)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정부위원) : 기후부 장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농식품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기상청장, 산림청장 등

□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2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24명으로,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 회의에서는 ①~④물관리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과, ⑤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⑥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논의하였다.

*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안),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이날 심의한 물관리 법정계획 4건 모두 부합한 것으로 의결되었다.

○ 또한, 위원회는 물관리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1년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 국민체감형 통합 물관리 사업 반영 등 주요 변경사항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⑦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오늘부터 시행되는 ⑧녹조계절관리제 등 국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주요 현안도 논의하였다.

□ 김 총리는 "이제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가물관리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좌관 민간위원장 또한 "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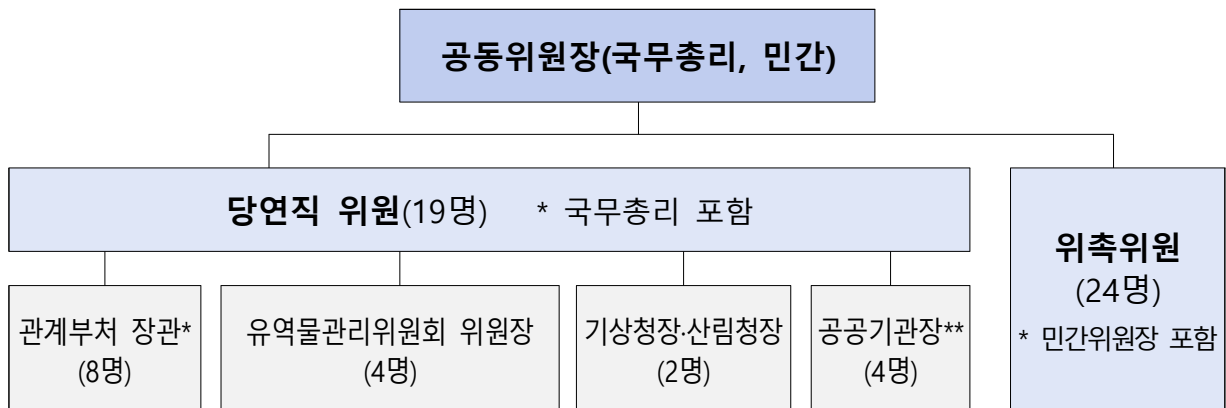
<총괄>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김지성 (044-200-2341)
		담당자	서기관	김인규 (044-200-2351)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책임자	과 장	정지민 (044-201-8930)
		담당자	사무관	김미노 (044-201-8933)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사무관	강성안 (044-201-7628)
여름철 홍수대책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최재웅 (044-201-7651)
		담당자	사무관	함지범 (044-201-7652)
녹조계절 관리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김민중 (044-201-7002)

- (근거)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 (기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물관리 관련 중요 현안 등 심의·의결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대상(물관리기본법 제22조)>

- 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평가
- ②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앙행정기관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 ③ 수계별 유역범위의 지정
- ④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이동
- ⑤ 중앙부처·광역지자체 간 물분쟁 조정
- ⑥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 ⑦ 물관리 관련 위원장 상정 사항

- (구성)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물관련 단체·기관, 법조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
 - (당연직)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15명 및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명
 - (위촉직) 대통령이 위촉한 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 물분야 전문가 24명
- *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23명 '26.2.3 위촉(임기 3년)



* 재경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수자원공사·수력원자력(주)·농어촌공사 사장 및 환경공단 이사장

[안건1~4] 물관리 관련 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심의

□ 부합성 심의 개요

- (근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 위원회 심의 필요

※ 「물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제27조

- (평가요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①비전·목표 ②물수급·수질 전망 ③물환경 ④물이용 ⑤물안전 등 10개 계획요소별 검토, 부합 여부 심의

⇒ 분과위, 4건 모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한다고 심의·의결

□ 심의 대상 계획의 주요 내용

연번	계획명	주요 내용
심의 ①	제3차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 제4조에 근거해 기후부 장관이 국가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2026~2035) ○ 사회 여건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하수도 정책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대응) 노후하수관로정비 목표(2,100km→4,800km), 도시침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상향(57개소→150개소) - (물순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상향(8%→25%) - (탄소중립)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률 상향(18.68%→30%), 재생에너지 생산량 향상(바이오가스 2.1억Nm³/년→3.9Nm³/년 등)
심의 ②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재이용법」 제5조에 근거해 기후부 장관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계획기간 2021~2030) 변경 ○ 기후위기 및 사회 여건을 반영한 물재이용 정책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이용량 대비 물 재이용률 목표 신설(7.2%, 28.5억m³) - 하수처리수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대체율 상향(16.5%→20%) - 공업용수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률 상향(15%→22.9%)

심의 ③	제4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법」 제6조에 근거해 기후부장관이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계획기간 2022~2031) 변경 ○ 지하수저류댐 개발 가능지점에 '강릉성산(남대천)' 추가 ※ 2025년 기준 강릉시 생활용수의 86.6%를 단일 수원(오봉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저류댐 개발로 수원 다변화 필요
심의 ④	대청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 제4조의2에 근거해 유역환경청장이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20년 단위 계획(계획기간 2021~2040) 변경 ○ 공공하수처리시설(신설 23개소, 증설 11개소) 및 오수·우수관로 확충(오수관로 신설 323.7km, 우수관로 신설 14.2km) 계획 반영

[심의안건5]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추진배경

- 주요의제에 대해 본회의 의결 이전에 사전 조율과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복수의 분과위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구성 필요

※ 현행은 분과별(계획분과/정책분과/분쟁조정분과)로 소속 위원으로만 소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복수의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설치 (신설)	<신설>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각 분과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보고안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

I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수립('21.6)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물관리기본법」 제27조)

□ 추진경과

- 기초조사 실시('25.3), 기존계획(114개 과제)의 이행성과, 한계 등 추진 상황 평가(~'25.8),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초안) 마련(~'26.3)
- 각계 전문가 포럼('26.3), 국가위(민간위) 현황보고 및 의견수렴('26.4~)

II 주요 변경내용

[변경계획의 5대 핵심 키워드]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혁신	통합물관리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물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자연성 회복 강화 •미량오염물질 제거 관리강화 •유역 맞춤형 오염총량 관리 •하천수 배분 우선순위 정립 •위터포지티브 확대 등 수요관리 •재이용 활성화, 지하수 활용 •물관리 인공지능(AI),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지·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첨단산단 안정적 용수 확보 •부처협업 녹조계절관리제 실시 •지역맞춤 물순환 복합사업 추진 •국가·유역단위 물관리 계획 통합
물수급, 수질전망 제시		관리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섬유역 가뭄('22~'23)등 실제 가뭄 예측분석 강화 •'30년 수질 등 물환경전망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의 이행을 위한 '30년 정량적 물관리 목표 설정

① (기후위기 대응)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통합적인 물관리

- 미래 기후·수문 예측 위험평가, 시설물 관리기준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 제시, 물수급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 물 기반시설 에너지 효율화 및 수열·수상태양광·하수열 등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탄소감축
- 기후위기 대응 AI융합, 재생에너지 등 물관리 신기술 지속 개발

- ② (물관리 혁신) 하천 자연성 회복, 합리적 물배분 등 물관리 정책 혁신
- (물환경) 합리적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하천의 자연성 회복 강화, 미량오염물질 제거로 폐수 관리 강화 및 유역 맞춤형 오염총량 관리 확대
 - * 9월 중간점검을 거쳐 처리방안이 신속히 마련되는 보는 처리방안 포함 예정
 - (물이용)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 단축(5년→2년) 및 워터포지티브* 확대 등 수요관리 강화, 실사용량을 고려한 하천수 배분 우선순위** 정립으로 물 배분구조 개선, 물재이용 활성화 및 지하수 활용 등 수자원 다변화
 - * (개념)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복원·재이용(민관협력)
 - **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물부족에 대비해 생·공·농 용수 배분 우선순위 마련
 - (가뭄대응) 극한가뭄 감시·예측·대응 기술개발과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기존 수자원시설간 연결을 통한 가뭄 위험 대비
 - (홍수안전) 미래 예측역량 강화, 안전기준 강화, 물인프라 정비, 인공 지능(AI)기반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 예보 지역 확대, 도시 침수대응 인프라 확충, 침수 우려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대피·통제시스템 구축
- ③ (통합물관리 20) 국민체감, 범부처 협업 통합물관리사업 추진
- 농업용저수지,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생·공용수, 홍수대응 등) 활성화
 - 국가 첨단산단의 안정적 용수 확보
 - 오염원 관리, 물 흐름 개선 등 관계기관 협력 녹조계절관리제* 추진
 - * 녹조 심화시 오염원 관리강화 및 지역 협의에 기반한 보 순차 개방 등 조치 실시
 - 홍수가뭄 수질 등 복합 물문제 개선을 위한 맞춤형 물순환 복합사업 추진
 - 국가, 유역단위로 전략·계획 통폐합 및 체계 정비
 - * 국가-유역-지역단위 중복, 유사성을 고려해 계획간 통폐합(40→21개로 축소 검토)
- ④ (이행력강화) 계획 이행강화를 위한 2030년 관리지표*, 목표 설정
- * (현행) 14개 지표(BOD, TOC 등) → (개선) 13개 신규지표 추가(종합물환경지표 등)

Ⅲ 향후 계획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심의·의결(국가물관리위, ~26.下)